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·대외경제장관회의
26-12-4
(공개)

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

2026. 4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1. 추진배경 및 경과 1
2.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2
3. 향후 계획 4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[추진배경]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외국인력 정책도 전환 필요

-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, 이들의 빠른 증가*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리나라 일자리 지형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

* 취업자수 증가율('12 → '25년): <전 체> 15.3% (2,496만 → 2,877만)
<외국인> 58.9% (69.8만 → 110.9만)

- 외국인 취업자는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노동시장 수급 상황과 정합성 있게 검토될 필요

- 그러나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인력도입, 노동조건 보호,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등 비체계적 운영 및 중복·사각지대 상존

□ [추진경과] 노사정이 함께 다양한 대안 논의

- 이재명 정부는 '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*'을 국정과제에 반영

* 외국인력 수급 설계,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·제도 정비,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 등 포함

- 노동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사·전문가·부처간 협의체로서 '25.12.~'26.2.까지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TF」* 운영

* 노동계, 경영계, 현장전문가, 학계, 정부, 자치단체·유관기관 등 26명으로 구성

- △통합정책 기반 마련 △숙련인력양성체계 구축 △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△도입체계 개선 △권익침해예방 등 논의

- 토론회(4.3, 4.9.) 개최 등 공론화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도 병행

□ [추진방향]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

❖ '일하는 모든 외국인'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, 노동조건 보호, 산업안전, 체류·귀국지원까지 일련의 통합적 정책 추진

❖ 외국인 노동자, 국내 기업 및 내국인 노동자가 모두 Win-Win 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

Ⅱ.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

<1>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·지원

○ (현황) 외국인 고용 수 과정의 통합적·체계적인 지원체계 미흡

* (수급설계) 각 부처 소관별로 도입규모 결정 (도입) 불법브로커, 송출비리 문제 (체류지원) 체류자격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, 산업안전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

○ (추진방향) “도입-능력개발-노동조건 보호-이직” 등 전 과정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 통합 관리·지원

① 노동시장 전망 바탕으로 수급설계 체계화

- 이주노동자가 노동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가능 외국인의 분야·직능수준별 수급 설계

② 외국인력 도입 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

- 과도한 송출비용 및 중간착취 방지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입체계 개편

③ 비숙련 인력이 숙련도를 높여갈 수 있는 유인체계 활성화

- 한국어·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비숙련 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, 숙련을 쌓은 우수인력의 장기체류 기회 확대

④ 국내 생활 및 근로조건 보호 등 통합적·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

-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취업, 근로조건 개선, 산업안전 등 통합지원

- 부처간 정보 연계 통한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감독 단계적 확대 등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 및 체류지원 강화

-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취업자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 국가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각자의 준수사항 제시, 계도

<2>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 및 취업활동 개선

- (현황) 외국인 노동자의 **취업기간** 및 **사업장 변경** 등 제한
 - * **취업기간**: 4년 10개월 (최초 3년 + 연장 1년 10개월),
일정 요건 충족 시 1개월 출국 후 다시 4년 10개월(3년 + 1년10개월) → 총 9년 8개월
 - * **사업장 변경 사유·횟수**
 -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·갱신거절 → 3년간 3회 + 연장 1년 10개월간 2회
 - ② 인권침해, 부당한 처우, 휴·폐업 등 외국인 책임이 아닌 경우 → 횟수 제한 없음
 - * ①수도권, ②경남권, ③경북·강원권, ④전라·제주권, ⑤충청권 등 권역 내 이동 원칙
- (개선방향) **외국인 노동자 인권**, **중소기업 인력난**, **내국인 노동자 일자리** 등을 모두 고려하여 **상호 윈윈하는 지속가능한** 방향 모색
 - ❶ 장기 취업활동 및 숙련인력 장기 고용이 가능하도록 일정 요건 하에 **출국절차 없이 장기 근무**하는 방안 추진
 - ❷ 사업장 이동 **사유·횟수** 및 **권역 제한** 등을 **완화**하되, **기업의 사정** 및 **내국인 일자리 보호**도 함께 고려하여 **합리적 방안** 도출
 - ❸ **부당한 대우**, **위험한 근무환경**에 놓인 경우 **원활한 이동** 지원, 지나치게 빈번한 이직 방지 위해 **장기근속 인센티브** 병행
 - ❹ 고용허가 신청 **사업주 심사** 및 **사전 인권 교육** 등 강화

<3> 권익침해 예방 및 실질적 보호 강화

- (현황)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취업, 산업재해, 임금체불 등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
- (주요 내용) **일터 안·밖 인권침해 해소**를 위해 '상담-신고-감독'을 아우르는 **근로조건 보호** 및 주거환경 개선 등 **체류지원 강화**
 - ❶ 취약한 지위로 인해 정부기관 등에 방문·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온·오프라인 상담·신고 체계 강화**

- ② 정기 지도·점검에 더해 관계부처·자치단체-노동부 합동점검 등 외국인 **취약사업장 선제 발굴** 및 **집중 감독** 추진
- ③ **인권침해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제한 강화**(’26년~)
 - * (인권침해) 1년, 반복적발 시 3년 →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높은 경우 최대 3년 (사망사고) 1년 → 3년, 중대재해 해당 질병·부상 등 고용제한(1년) 신설
- ④ **불법숙소 제공 금지 규정 명확화**(외국인고용법 개정, 법사위 의결), 및 **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속 지원***
 - * 외국인기숙사(’25~’27년, 54억), 농가 주거개선 지원(’26년 신규, 16억) 등
- ⑤ 외국인 노동자 **주거환경 개선, 교육·상담** 등을 위한 **자치단체 지원근거 신설** 추진(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3 신설)
- ⑥ 노동권익재단 등과 연계한 **민·관 공동캠페인** 전개(4.17 MOU 체결) 및 **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 인권교육 내실화**
 - * (이름 부르기) 작업복·헬멧 등에 한국어로 된 이름 부착, 문화 소개자료 배포 등 (더불어 살기)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, 모국어 메뉴판·포크 제공 등

Ⅲ. 향후 계획

- 추진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추가 협의 등을 거쳐 **최종안 마련**(5월)
- 노·사 개별 설명, 토론회 등 **다양한 의견수렴 병행**(5월)
- 「**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**」 발표(~6월)
- 로드맵 내용을 토대로 「**외국인고용법**」 개정 추진
- * 주요 내용: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